

수수료 부과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사규번호: 8-6

승인권자: 대표이사

기안부서: 자산관리팀

주요
내용

집합투자기구의 보수 및 수수료의 부과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

개정
이력

차수

제(개)정일

시행일

주요 개정내용

1

09. 7...

09. 7...

제정

DRAFT

--	--	--	--	--

수수료 부과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제 정 2009.7..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 58 조에 근거하여 회사가 투자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투자자 간의 정당한 사유없는 차별을 방지하고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회사가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본시장법 및 동법 시행령, 금융투자업규정 및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그 외 관련 법규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규약 등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수수료"라 함은 회사가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적용되는 각종 보수 및 수수료로서 아래 각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보수

집합투자재산의 설정,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대가로 집합투자기구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수의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운용보수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보수

나. 성과보수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연동하여 미리 정하여진 산정방식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보수

다. 판매보수

판매회사가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집합투자기구의 설정, 집합투자재산의 분배,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및 해산 등에 있어 집합투자기구의 존속기간 동안 투자자에게
용역을 제공함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보수

라. 신탁업자보수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관리 등의 용역을 제공함에 따라
집합투자기구 로부터 받는 보수

마.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의 계산 등의 용역을 제공함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보수

바.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보수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가 집합투자기구를 평가하고 이를 투자자에게 제공함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

2. 수수료

가. 판매수수료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대가로 투자자로부터 직접 받는 금전을 말한다.

나.환매수수료

집합투자자가 집합투자계약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금전

다.투자자문수수료 및 투자일임수수료

회사가 제공하는 투자자문 또는 투자일임업무에 대한 대가로 투자자 또는
투자일임재산으로부터 받는 금전을 말하며 그 투자자문재산 또는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실적에 연동하여 받는 성과수수료를 포함한다.

제4조 (수수료의 부과기준)

- ① 회사는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금액 또는 비율을 정함에 있어서 투자자를 정당한 사유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새로운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수수료는 기존의 다른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수수료, 비용과 수익의 수준 및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 ③ 투자자문수수료 또는 투자일임수수료의 수준 및 계산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법규에서 달리 정하는 사항이 없는 한 투자자와 합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 ④ 성과보수에 관하여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성과보수는 사모집합투자기구이거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니라 하더라도 경우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수취할 수 있다. 단, 후자의 경우 성과보수 지급시기는 회계결산시점에서 매년 1 회만 지급해야 하며, 그 내용을 자산운용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가.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 널리 사용되는 공인된 지수이며, 집합투자기구의 성과를 공정하고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고, 검증가능하고 조작할 수 없는 기준지표에 연동하여 산정될 것

나.집합투자기구의 운용성과가 기준지표의 성과보다 낮은 경우에는 성과보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보다 적은 운용보수를 받게 되는 보수체계를 갖출 것

다.집합투자기구의 운용성과가 기준지표의 성과를 초과하더라도 해당 운용성과가 부의 수익률을 나타내거나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여 그 성과가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성과보수를 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

(1) 성과보수를 지급하게 됨으로써 당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성과가 부의 수익률을 나타내게 되는 경우

(2) 집합투자계약에서 일정 기간 별로 구분하여 성과보수를 지급하게 되어 있는 경우로서 개별 기간 종료시점의 기준가격이 이전의 개별 기간의 종료시점의 기준가격 중 가장 높은 수준을 하회하는 경우(성과보수를 지급하게 됨으로써 하회하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경우 기준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 지급된 분배금은 이를 포함한다.

라.법인 및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10 억, 개인인 경우에는 5 억 이상을 투자한 투자자로만 구성될 것

마.최소 존속기간이 1 년 이상으로서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로 설정, 설립하되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발행하지 아니할 것

2. 성과보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해당 투자설명서 및 집합투자계약에 기재하여야 한다.

가.성과보수의 산정방식

나.성과보수가 지급된다는 뜻과 그 한도

다.성과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높은 투자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

라.성과보수를 포함한 보수 전체에 관한 사항

마.기준지표

바.성과보수의 지급시기

사.성과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관한 사항

아.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을 담당하는 투자운용인력의 경력

자.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을 담당하는 투자운용인력의 운용성과

⑤ 기타 보수에 관하여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1. 판매보수는 집합투자재산의 연평균가액의 100 분의 5 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판매수수료는 납부금액 또는 환매금액의 100 분의 5 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환매수수료는 환매금액 또는 이익금을 기준으로 부과하며 판매회사 또는 회사가
환매대금을 지급할 때 이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받음으로써 해당 투자자가 부담하며
투자자가 부담한 환매수수료는 집합투자재산에 귀속된다.

제5조 (수수료의 결정)

- ① 수수료 수준은 운용자산의 특성, 포트폴리오의 규모, 요구되어지는 서비스 수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개별 투자자 기준으로 결정한다.

② 사업개발팀은 재무기획팀의 동의 하에 수수료의 비율 또는 금액 등에 대하여 결정하여 집합투자규약 등에 반영한다.

③ 사업개발팀은 성과보수를 결정함에 있어 기타 유사한 구조를 갖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를 고려하여야 하며,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받는다.

제6조 (수수료의 부과절차)

① 회사가 투자자로부터 받는 각종 수수료의 비율 또는 금액, 수수료 지급주기 및 지급시한 등과 관련된 부과절차는 집합투자규약, 투자자문계약서 또는 투자일임계약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재무기획팀은 수수료의 부과와 관련된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주관부서가 된다. 다만, 운용보수 및 성과보수의 부과와 관련된 경우에는 사업개발팀 및 자산관리팀은 해당 절차를 주관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집합투자기구, 투자자문, 투자일임 등의 수수료를 결정함에 있어서 관련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제반 제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과도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수수료의 인상)

회사는 이 규정에 따라 결정된 집합투자기구의 수수료를 인상하기 위해 집합투자규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집합투자기구의 형태 별로 자본시장법 제 190 조에서 정한 수익자총회 결의, 제 201 조에서 정한 주주총회, 제 210 조의 사원총회, 제 215 조의 사원총회, 제 220 조의 조합원총회, 제 226 조의 익명조합원총회를 거쳐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8조 (설명의무)

회사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제 47 조 제 1 항 및 동법 시행령 53 조에 따라 이 기준에서 정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제9조 (투자광고)

회사는 투자광고(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광고를 제외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제 57 조 제 2 항 및 동법 시행령 제 60 조 제 1 항에 따라 이 기준에서 정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0조 (공시 및 통보)

회사는 이 규정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한국 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기준의 개정 및 폐지)

이 규정은 개정 및 폐지는 사규관리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 년 7 월 부터 시행한다.